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0. 29 선고 2023가단133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피 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원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10. 24. 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G에게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10001 물품대금 사건의 2019. 5. 22.자 변론기일에서 ‘G가 소외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47,241,133원 및 그 중 231,157,960원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낙하였다(이하 소외 회사의 G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9. 16.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G의 모친 I은 2020. 9. 7. 사망하고, 부친 J은 2020. 10. 24. 사망하였는데, 그들 사이의 자녀는 G와 피고들이다. 사망 당시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G는 2020. 11. 5.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0느단417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20. 11. 20. 수리되었다. 마. 피고 F은 I과 망인의 상속인 대표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20. 11. 25. 망인 상속금 명목으로 2,470,585원, I 상속금 명목으로 15,466,119원을 입금받고, 우체국에서 3건 합계 27,483,41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I, 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액 45,420,114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 F은 2020. 11. 30. ‘부모님상속’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7,570,019원씩을 나누어 송금해주었고, G 몫에 대해서는 G의 요청에 따라 G의 딸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위 금액(이하 ‘제1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해주었으며, K는 생활비에 보태라는 G의

말에 따라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바. 망인과 I이 조합원탈퇴에 따른 정산금, 배당금 등의 채권이 있는 상태로 사망함에 따라 피고 F은 상속인 대표로서 2020. 12. 23.부터 2021. 2. 3.까지 위 명목으로 합계 21,290,322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 F은 2021. 4. 3. ‘부모님상속’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2,801,381원씩을 나누어 송금해주었고, G 뒀에 대해서는 G의 요청에 따라 K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위 금액(이하 ‘제2송금액’이라 하고, ‘제1, 2송금액’을 합하여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해주었으며, K는 생활비에 보태라는 G의 말에 따라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사. 그 후 피고들은 2021. 3. 25.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1/5 지분씩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21. 4. 5.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에는 ‘2020. 10.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아. G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21. 11. 25.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가단20646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할 당시 또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가처분등기 경로)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1. 11. 2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들이 2022. 2. 14. ‘G가 2020. 11. 20.자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자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2022. 3. 15. 소를 취하한 점, ② 원고는 종전 소송 제기 이후인 2021. 11. 26. 및 2021. 11. 24.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카단11027호 및 2021카단11122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1. 30. 및 2021. 12. 31. 위 가처분결정을 인용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으나 종전 소송을 취하함과 아울러 2022. 3. 18. 위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한 점, ③ 한편, 원고가 2023년경 G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G가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의 상속포기를 한 이후 상속인들로부터 딸인 K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G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를 함으로써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위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전 소송 제기 및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칠 무렵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23. 3. 21. 제기한 이 사건 소의 경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G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송금액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G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G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6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또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G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G의 법적상속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G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들 앞으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은 G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일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G와 피고들 사이에서 G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G가 상속포기 이후 2020. 11. 25. M조합에 망인의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망인의 M조합에 대한 금융채권을 상속받는다는 약정서와 영수란에 서명을 제출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수령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을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와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앴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G가 망인의 상속재산이었던 예금 등에 관하여 상속인들로부터 G의 딸 K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송금액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예금 등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피고 F의 계좌로 이체된 점, ② 피고 F와 G가 위 금융기관의 예금을 피고 F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면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서 상속인 전원은 다음과 같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합니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을 한 것은 M조합의 요청에 따라 M조합이 향후 발생할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 작성한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일 뿐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의사로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민법 제1026조가 규정한 법정단순승인 제도의 취지는 상속채권자와 다른 상속인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고와 같은 상속포기자의 고유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상속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써서 없앴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G가 상속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G가

피고들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G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영

별지